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가단121176 판결 [대여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나3959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가단121176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기

담당변호사 심형훈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진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수정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6.부터 2022. 6. 13.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1. 1. 14. 접수 제3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64901호로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2.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12.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2012. 7. 15.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 B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1. 1.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

법원 북부등기소 2011. 1. 14. 접수 제3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6. 10. 피고들 각 1/4 지분, D, E 각 1/4 지분씩 1991.

12. 6.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2011. 1. 14.

피고 C 명의로 2011. 1.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현재까지 피고 C이

1/2 지분, D, E이 각 1/4 지분씩 위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2. 7. 16.부터 2022. 6. 13.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2012. 7.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1. 1. 14. 접수 제3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제기된 이 사건 금전지급청구와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1. 11.경부터 2012. 4. 24.까지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전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역시 피고들의 변제를 인정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F에게 2012.
4. 19. 10,000,000원, 2012. 4. 24.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이 피고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무효라거나 이미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연

별지

목 록

1. 서울 중랑구 대 299.5㎡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3층 주택 및 점포 사무실
 - 1층 178.45㎡
 - 2층 178.45㎡
 - 3층 133.45㎡
 - 4층 133.45㎡
 - 지하실 138.65㎡(내 1층 면적 중 주차통로 36.123, 4층 용도 사무소), 끝.

